미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1. 12. 2. 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. 11. 16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1.11. 17.

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위원회(2021, 12, 2,)

상정. 심사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보건행정과장

1) 제안이유

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돕고 지역 주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(정신의료기관)에 위탁운영 하고자 「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) 주요 내용

가. 위탁대상 현황

1)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4길 15 성산1동주민센터 3층

2) 시설현황 : 연면적 245㎡(사무실 포함 6실)

(단위 : 개)

계	사무실	센터장실	상담실	회의실	프로그램실
6	1	1	2	1	1

나. 위탁 범위 및 내용 :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

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시설관리 전반

- 1) 정신질환자 등록 · 관리 사업
- 2) 자살고위험군 지원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
- 3) 지역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성 등
- 다. 위탁기간 : 3년 (2022. 4. 19.~2025. 4. 18.)
- 라. 소요예산 : 11억 6.390만원

※2022년 정신보건사업 가내시 기준으로 작성한 예산으로 추후 변동 가능

마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바. 수탁기관 선정주체 : 수탁기관 위탁운영 적격 심사위원회(별도 구성)

3. 검토의견(신준호 전문위원)

-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중인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2022.4.18.자로 만료 예정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 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 기 위한 것임.
-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사유를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구민의 정신건강수
 준 악화 및 정신질환자 사회지지 체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전문지식 및
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료기관·단체에 위탁운
 영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

고 있음.

-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7년 10월부터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2016.4월 '○○정신건강의학과의원'과 위탁 협약하였고 2019.4월
 재협약하여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음.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한 차례 연장 위탁하였기에 다가오는 위탁 만료기일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협약을 해야하는 것임.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선정방법이므로 바람직해 보임.
- 아울러, 해당 사무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13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 이내 로 준수하는 등 법률의 구조적 정합성을 이루었음.
- 다만,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직접 운영 사례가 있으므로 운영방식 차이에 따른 구민 정신건강 증진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등의 가치를 제고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음.



(표 1.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¹)(마포구), (통계청)〉

¹⁾ 인구십만명당 자살률=(자살 사망자수÷주민등록연앙인구)×100,000

구분	성별	2018년	2019년	2020년
마포구	계	20.4	20.2	19.7
	남	27.5	27.0	29.6
	여	14.0	14.0	10.9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